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. 1. 26 선고 2020가단1528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석

변론 종결 2021. 1. 5.

판결 선고 2021. 1. 26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"목록"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3. 6. 체결된 매매계약을 16,772,1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6,772,1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피고의 본안전 항변

원고는 별지 "목록"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한 피고와 D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2018. 3. 6.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같은 날 피고가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D이 원고에게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원을 상환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는 위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,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사해행위취소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. 9. 7. 그 가처분등기를 마친 바 있는데 원고는 그 무렵 D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재산조사를 마친 시점에서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것인데,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. 4. 20.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.

2. 판단

가.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'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'은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.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한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,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,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금융기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(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5다247707 판결,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).

나. 돌이켜 보건대, 을 제12호증, 갑 제2, 3, 4, 5, 7, 8,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2017. 9. 25. D에게 7,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중1,500만 원은 일별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D은 2018. 7. 10.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, 한편 D은 2018. 3. 6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,이후 원고의 직원 E는 2018. 8. 30.부터 같은 해 9. 3.까지 D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를 한 다음 피고가 2018. 3. 6.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, D 소유의 다른 2건의 부동산은 이전에 처분되는 등 D에 대한 재산조사 결과 본인 소유의 재산이 발견되지않았다는 내용의 재산조사결과표를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그에 따르면 원고로서는 그 직원인 E가 D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를 마친 2018. 9. 3.경에는 D이 2018. 3. 6.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, 당시 채무자인 D은 그명의로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알았다고 할 것인데,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. 4. 20.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.

판사 장한홍

별지

목 록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익산시 F에 있는 G아파트 H동

[도로명주소] 익산시 I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18층 아파트

2.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익산시 F 대 20066.3㎡

3.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1층 J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84.8965㎡

4. 대지권의 표시

소유권대지권 20066.3분의 49.1402. 끝.